

	교양교육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11		
		제정일	2020. 03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양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범위) 센터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기본 계획 수립
2. 교양 교육과정 개발, 개편
3. 교양 교육과정 성과관리
4. 학생의 소양과 교양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
5. 기타 교양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,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센터장은 본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간) ①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의 사항과 센터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양교육 운영위원회(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준 수립
 2. 교양교육과정 신설, 조정, 평가 및 폐지
 3. 교양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부서 간 조정
 4. 성과 확인·점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
 5. 그 밖의 교양교육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양교육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11		
		제정일	2020. 03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